

「기업자유예금플러스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「기업자유예금플러스」
- 상품특징 : 예치금액,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6.02.01.기준)

구 분	내 용	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 및 개인사업자 	
가입방법 및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 창구 가입 및 해지 가능 ※ 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 	
가입금액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없음 	
이자지급시기	기간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•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•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
	금액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• 선입선출법에 따른 매일의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•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 <p>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</p>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불가능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
수익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^{주1)})을 공제하여 지급 	
	<p>주1)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</p>	

구 분	내 용		
이자율	기간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중 1의 방법(기간별/금액별)으로 이자를 계산한다.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기본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<p>(기준일 : 2026.02.01. 세전 / 단위 : %)</p>	
	금액별	예치기간	연이율
		7일 미만	1.50
		7일 이상~30일미만	2.00
		30일 이상	2.50
위법계약 해지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중 1의 방법(기간별/금액별)으로 이자를 계산한다.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기본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<p>(기준일 : 2026.02.01. 세전 / 단위 : %)</p>	
		예치잔액	연이율
		10억원 미만	2.50
		10억원 이상	1.50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(개인사업자)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		
		※ '20.1.1.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분부터 「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
연계제휴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 		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께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20

고객명 :

(서명/인)

● 금융용어 설명

용어	내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